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8년 11월 29일(목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11. 29.(목)	담당부서	해외투자과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최우혁 과장(044-203-4090)	담 당 자	최원엽 사무관(044-203-4091)
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김성규 팀장(044-200-2221)		김서웅 전문위원(044-200-2220)
	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 이상영 과장(044-215-7310)		이정윤 사무관(044-215-7311)
	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박준호 과장(044-215-7230)		한주희 사무관(044-215-7231)
	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조만희 과장(044-215-4130)		권오현 사무관(044-215-4133)
	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장도환 과장(044-215-7630)		심수현 사무관(044-215-7632)
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김종범 과장(02-2100-3528)		오영곤 사무관(02-2100-3585)
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과장(044-202-7210)		이지은 사무관(044-202-7213)
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이순배 과장(042-481-4545)		윤성웅 사무관(042-481-4382)
	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김우순 과장(042-481-4431)		박지환 사무관(042-481-4437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손주형 과장(02-2100-2860)		이한샘 사무관(02-2100-2861)

『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』 발표

-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 확대 -

- 국내복귀 현장에서 마주치는 애로 해소 및 인센티브 보강 -

- 원스톱 지원데스크 구축(코트라)으로 지원절차와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-

"연내 유턴법 개정안 발의"로 속도감 있는 지원 추진

□ 정부는 11.29(목)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**"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"**(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)을 발표했다.

□ 그동안 정부는「**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**」(유턴법)을 제정('13.12) 하고, 일정 요건*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**보조금·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**해 왔다.

* 기업이 해외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'제조'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하고,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

○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여, **성과가 다소 제한적**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,

○ 유턴제도는 **국내 일자리 창출** 및 **투자 촉진**, **지역발전*** 등의 측면에서 **긍정적 효과**가 있는 등 이를 **더욱 활성화해야 해야 할 필요**가 있다.

* '14~'17년간 일자리 975개 창출, 51개 유턴기업 중 41개사(80.4%)가 非수도권으로 복귀

○ 이에 따라, 정부는 '유턴기업 중점 유치'를 **국정과제***로 선정하고, **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**하여 왔다.

* 국정과제 38번('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')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

□ **기업 해외진출 목적**이 **현지시장 확보**에 있는 만큼 **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다는 한계**와 함께,

○ 현장의 기업들은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 **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,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,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**하고 있으며, 이는 **잠재적 유턴기업의 복귀 의지를 저하**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.

○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폭넓은 업계 의견수렴*을 토대로, **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**하고, **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**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**"종합지원대책"**을 마련했다.

* 개별 기업방문('18년 28회), 전문가·유관기관 간담회(9.6), 호남권(10.11, 익산), 영남권(10.26, 대구), 수도권(11.7, 서울) 등 旣복귀·의향기업 간담회 개최

[대책 주요내용]

❶ 우선,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**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확대**이다.

○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%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, 앞으로는 **25%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**받을 수 있으며, **지식서비스업 기업,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**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.

* 고용유발계수(생산 10억원당 명, 현대경제硏) : 제조업(6.0) < 지식서비스업(15.3)

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(생산량 50%이상 축소 → **25%이상 축소**)

○ 해외사업장 청산·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축소요건으로 인해 국내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, 이번 대책으로 **현지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**할 수 있게 되었다.

< 사례 >
중국에서 배관자재를 생산하는 A사는 현지 생산량을 60%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 증설을 계획했으나, 미국 바이어로부터 발주량이 증가하여 생산 축소 예상규모가 30%로 변경되어 유턴기업 신청 보류
☞ 제도개편으로 유턴기업으로 인정 가능

유턴기업 대상업종 확대 (기존 제조업 → **지식서비스업 추가**)

○ 또한,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, 고용유발효과가 큰 **지식서비스업**을 유턴 대상업종에 추가함으로써 유턴을 통한 **다양한 일자리 창출**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
< 사례 >
미국에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(지식서비스업)를 개발하는 C사는 제도 개편이 될 경우 인센티브를 감안하여 국내투자를 검토할 예정

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 확대 (세분류 → **소분류 동일 제품**)

○ 현행 유턴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**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(4단위)**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데,

- 이번 개편안에서 **소분류(3단위)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**을 생산해도 **유턴기업으로 인정**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넓혀줄 수 있게 되었다.

< 사례 >
중국에서 유선전화기(2641)를 제조하는 B사는 현지시장규모 축소로 국내로 들어와 스마트폰 부품(2642)을 생산할 계획이나, 유턴 미인정에 따른 국내 투자 인센티브가 없어 베트남으로 이전을 고려 중 ☞ 제도개편 시 국내 투자 검토 예정

❷ **이번 대책은** 이미 복귀한 기업·유턴의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한 **현장애로를 해소**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중심으로 **인센티브의 질적 보강**에도 주력했다.

입지·설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

○ 입지·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**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**하고, **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**하여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했다.

*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을 과다 계상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당한 사례 다수 발생

○ 또한, 유턴기업이 입지·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시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으나, 앞으로는 **담보수단을 다양화***하여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

* 예: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

< 사례 >
E사는 입지・설비보조금 10억원을 승인받았으나,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4억원을 담보로 예치해야 함에 따라 가용자금 부족으로 투자 지연
☞ 제도개편으로 적기 자금투자 가능

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

○ 중소 유턴기업에 **1인당 월 60만원**씩 지급하는 **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'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**하고,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.

○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**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**이자, 입지・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**수도권 복귀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**으로,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안이다.

< 사례 >
국내복귀를 추진 중인 G사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될 경우 당초 20명 채용계획에서 추가 고용 의향

세제 감면 확대

○ **대기업**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"청산・양도"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되었던 **법인세 감면 혜택**을 **중소・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 "축소" 후 복귀 시에도** 부여하고,

- 중소·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**관세감면**(청산·양도 100%, 축소 50%)**을 대기업에도 부여**한다.

* 관세감면액 한도(청산・양도 : 4억원, 축소 : 2억원)도 폐지

○ 한편, 유턴기업이 법인세・관세감면을 받을 경우, **감면액의 20%**를 **농어촌특별세**로 납부해야 하는데, 이번 대책으로 **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**하게 **비과세로 전환**하게 된다.

< 사례 >
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관세 1억원을 감면받은 J사의 경우
☞ 제도개편으로 감면액의 20% (2천만원) 농특세 감면

입지 지원 강화

○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. **국·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, 장기임대**(50년), **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**(최대 100%)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,

○ **국가산단 '휴·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'**(산단공)을 활용하여 **유턴기업의 임대공장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**할 예정이다.

< 사례 >
유턴을 고려중인 소프트웨어개발(지식서비스업) 회사인 K사는 자가 공장 신증설보다 당장 입주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공장을 선호

정책사업 참여 우대

○ 이번 대책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**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**(금융위), **스마트공장 구축 지원**(중기부)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.

○ 특히,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유턴기업이 **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**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

-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**시설·운영자금 대출 시 부채비율 심사 없이 대출(45억원 한도)**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< 사례 >
베트남에 진출한 M사는 당초 국내와의 인건비 격차로 유턴을 포기했으나, 국내 자동화 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유턴 재검토 의사

❸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유턴기업 **지원체계를 일원화**하고, **복잡한 절차를 간소화**한 점이다.

○ 이를 위해 **코트라**에 유턴기업을 위한 **"원스톱 지원 데스크"를 구축**하여, **기업이 코트라를 1번 방문함으로써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**하게 할 예정이다.

- 이로써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**최소 3~4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·방문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**할 수 있게 된다.

○ 뿐만 아니라, 수요자 입장에서 **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**(68개→29개) 하고, 현행 규정상 **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**(폐지3, 연장3) 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게 된다.

❹ 이밖에도,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**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***하고, 이를 **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**할 예정이다.

* 코트라-수출입은행 간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D/B를 보완('19.1분기)

□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**신증설·제3국이전**을 고려하거나,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**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**할 계획이며,

○ '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,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○ 그러나, 현지시장 확보 등 경영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 지원 대책만으로 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,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**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**해 나간다는 입장이다.

* 기업들의 해외진출 동기(최근 5년, 수출입은행) : ① **현지시장 진출(71%)**, 수출촉진(13%), 저임활용(7%) 등

□ 산업부는 연말까지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 「**유턴법**」 **개정안 국회발의**를 **추진**하여 **속도감 있게 지원대책을 뒷받침**하는 한편,

○ 내년부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**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**, 현지 **홍보활동도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별첨 : 「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최우혁 과장(☎ 044-203-4091), 최원엽 사무관(☎ 044-203-40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개관**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항 목</th><th>현 행</th><th>개 선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❶
유턴기업
인정범위
확대</td><td>해외사업장
축소요건 완화</td><td>해외사업장 50% 이상 축소</td><td>25% 이상 축소로 완화</td></tr>
<tr><td>대상업종 확대</td><td>제조업만 지원</td><td>지식서비스업 추가</td></tr>
<tr><td>생산제품
범위 확대</td><td>해외와 동일한
세분류(4단위) 제품
국내생산시 유턴 인정</td><td>세분류(4단위) →
소분류(3단위)로 완화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❷
인센티브
강화</td><td>입지·설비보조금
지원요건 완화</td><td>①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
②타당성평가 60점 이상</td><td>①20인 이상으로 하향
②타당성평가 기준 보완</td></tr>
<tr><td>입지·설비보조금
담보부담 완화</td><td>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 독점
→ 高보험료+현금예치 요구</td><td>담보수단 다양화
* 예시 : 현금예치 요구 없는 지급보증서 발급(산업은행)</td></tr>
<tr><td>입지·설비보조금
지급대상 확대</td><td colspan="2"><table><tr><th colspan="2">대기업</th><th colspan="2">중견·중소기업</th></tr><tr><th>청산·양도</th><th>축소</th><th>청산·양도</th><th>축소</th></tr><tr><td>× → ○</td><td>× → ○</td><td>○</td><td>× → ○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고용보조금
지원기간 확대</td><td>1년</td><td>2년으로 확대</td></tr>
<tr><td>법인세·관세
감면대상 확대</td><td colspan="2"><table><tr><th></th><th colspan="2">대기업</th><th colspan="2">중소·중견기업</th></tr><tr><th></th><th>청산.양도</th><th>축소</th><th>청산.양도</th><th>축소</th></tr><tr><td>법인세</td><td>○</td><td>× → ○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/tr><tr><td>관세</td><td>× → ○</td><td>× → ○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농어촌특별세 감면</td><td>외투, 지방이전만 감면</td><td>유턴기업도 감면</td></tr>
<tr><td>입지 지원 강화</td><td>산업단지 입주 우선</td><td>국·공유지 사용 특례,
임대공장 지원 등 추가</td></tr>
<tr><td>국가 정책사업
참여 우대</td><td>-</td><td>유턴기업 우선 지원
(정책자금, 스마트공장 등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❸
지원체계
간소화</td><td>지원 절차 및
서류 간소화</td><td>각 지원제도
개별신청·개별심사</td><td>신청·심사 일원화
(원스톱 지원데스크)</td></tr>
<tr><td>신청기한 간소화</td><td>보조금 신청을 위해
11개 기한 준수 필요</td><td>3개 기한 폐지
3개 기한 연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❹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</td><td colspan="2">· 해외진출기업 D/B 구축 및 정비(코트라-수은 협업)
· 유턴 수요발굴 및 제도개편 홍보</td></tr>
</table>